

#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4
----------	------

제출연월일 : 2020. 3.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 1. 제안이유

현재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내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내부조항을 보완하여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목적을 명확화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제명 개정)
- 나.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목적 및 설치(안 제1~2조)
- 다.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항(안 제3~9조)
  - 이사회 및 임원 구성, 이사의 임기·해임 및 처우, 심의사항, 운영사항 등
- 라. 자원봉사센터 운영재원(안 제10조)
- 마. 자원봉사센터 사업 및 조직 구성(안 제11~15조)
  - 센터의 사업, 센터장 선임 및 직원채용 규정 등
- 바. 자원봉사센터 행·재정적 지원 및 센터의 예·결산 사항 (안 제16~20조)
  - 센터 지도·감독, 공유재산 대부, 소속공무원 파견, 봉사자 실비지급
- 사. 관계규정 및 시행규칙 규정(안 제21~22조)
- 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지급기준(안 별표1)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년 1월 14일 ~ 2020년 2월 3일(21일간)

나. 의견내용 : 덧붙임

**8. 부서협의 결과**

가. 예산수반 사항 : 의견없음

나. 규제개혁 관련 협의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 분석 평가 : 해당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 설치)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설립 한 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이사회 및 임원) ① 이사회는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상임이사는 제13조에 따른 센터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하남시 자원봉사업무 담당국장
2.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센터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하남시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

2.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법령과 회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 사람

④ 임원의 결격사유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를 총괄한다.

⑥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이사의 처우 등)** 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사의 해임)** ① 시장은 선임직 임원이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제3항 및 관련 법령, 정관 등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경우

4.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제7조(정관)** 이사회는 이사회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이사회 심의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요 규정의 제정 및 변경
8. 기본자산 및 기금의 설정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운영 상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이사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이사장이 이사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센터의 기본재산은 하남시(이하 “시” 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사업
2. 영 제10조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등
3.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관리
4.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2조(센터 사무국 운영 등)** ①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 사무국의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인구 수와 센터의 사업규모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장의 선임 등)** ①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공개 모집한다.

② 이사회는 센터장 교체 시 전 센터장 임기 만료 전에 새로운 센터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방법 및 절차, 세부사항 등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센터의 직원 채용)** ① 이사장은 센터의 직원을 채용한다. 이 경우 직원 채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를 따른다.

② 센터 직원의 결격 사유 등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15조(센터장 및 직원의 겸직 제한)** 센터장 및 직원은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외부강의 및 회의 등을 관련규정에 의거 미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시작 4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예산에는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결산관련 자료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센터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와 운영에 대하여 확인·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센터가 업무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자 실비지급)** ① 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별표 1과 같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출자출연법을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서명		자치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박진호
	팀장 직위·성명	자치행정팀장 최현숙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장희진 (790-5231)

[별표1]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지급기준(제20조 관련)

구 분	지급기준
하남시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기간 : 1일 4시간 이상</li> <li>• 교통비 : 3,000원 이내</li> <li>• 급식비 : 8,000원 이내</li> <li>• 활동용품비 : 실비</li> </ul>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채(社債)의 발행
2. 공고의 방법
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2.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예산이월 설명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및 검토결과

조 항	제출자 및 의견	부서 검토 결과	비고																																						
제 12 조 (센터 사무국 운영 등) 제 2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자 :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li> <li>· 의 견 : 최근 하남시 유입인구 급증으로 자원봉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단의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진행예정임에 따라 직원정원을 당초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여 규정 요청</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당초 개정안</th> <th style="width: 50%;">수정 의견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센터 사무국의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되, 인구 수와 센터의 사업 규모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td> <td style="padding: 5px;">센터 사무국의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u>10명 이내</u>로 하되, 인구 수와 센터의 사업 규모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td> </tr> </tbody> </table>	당초 개정안	수정 의견안	센터 사무국의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되, 인구 수와 센터의 사업 규모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센터 사무국의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u>10명 이내</u> 로 하되, 인구 수와 센터의 사업 규모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우리 시 미사, 위례인구 유입으로 자원봉사 수요증가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li> <li>· 감일지구 입주, 신도시(교산) 지구지정에 따라 40만명의 인구예상 및 자원봉사 수요인구 증가가 전망되므로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li> </ul> <p style="margin-top: 10px;">※참고자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중          &lt;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 최저기준&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0%;">인구규모</th> <th colspan="4">상근인원 최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만 미만</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4명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만 이상 10만 미만</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5명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만 이상 20만 미만</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6명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만 이상 35만 미만</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특별시 광역시 자치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7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도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8명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5만 이상 50만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8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9명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 이상</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0명 이상</td> </tr> </tbody> </table>	인구규모	상근인원 최저기준				5만 미만	4명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5명 이상				10만 이상 20만 미만	6명 이상				20만 이상 35만 미만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7명 이상	도지역	8명 이상	35만 이상 50만 미만	8명 이상	일반시	9명 이상	50만 이상	10명 이상				반영
당초 개정안	수정 의견안																																								
센터 사무국의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되, 인구 수와 센터의 사업 규모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센터 사무국의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u>10명 이내</u> 로 하되, 인구 수와 센터의 사업 규모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인구규모	상근인원 최저기준																																								
5만 미만	4명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5명 이상																																								
10만 이상 20만 미만	6명 이상																																								
20만 이상 35만 미만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7명 이상	도지역	8명 이상																																					
35만 이상 50만 미만		8명 이상	일반시	9명 이상																																					
50만 이상	10명 이상																																								